

2025년 파주시청소년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

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리스크 방지 및 인권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재단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

1. 추진개요

□ 관련근거

- (내부규정) 「파주시청소년재단 인권경영 지침」 제29조(인권영향평가의 실시)
- (외부근거)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」, 2018, 국가인권위원회

□ 인권영향평가 실시개요

- 실시기간: 2025. 4. 28. ~ 7. 28. (3개월)
- 추진방법: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실시
- 소요예산: 금17,000천원 (VAT포함)
- 추진내용
 - 대·내외 인권경영 환경분석 및 재단 인권영향평가 운영모델 구축
 -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(중대성 평가 및 주요인권이슈 도출)
- 평가대상 (평가항목)

구 분	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	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평가대상	재단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평가 (인권경영, 노동권, 산업안전, 공급망, 환경권, 직장 내 인권보호 등)	재단의 특정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·분석
평가항목	총 11개 분야 - 35개 항목 - 171개 지표 (24년 10개 분야 - 158개 지표) ※ 인권위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관 현황에 맞게 신규지표 추가	총 1개 분야 - 5개 항목 - 23개 지표 (24년 미실시)

2.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

□ (4~5월) 착수회의 및 인권실태조사 진행


- 인권영향평가 착수회의 개최(4.30.)
 - 인권영향평가 수행 착수 보고 및 진행과정, 체크리스트 등 협의
- 인권실태조사 문항개발 및 조사 진행
 - 인권실태조사 문항개발(5.2.~16.), 실태조사 진행(5.19.~30.)

□ (5~6월)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선정, 문항개발 및 평가 진행

- 인권영향평가 자체평가 문항개발, 지표교육, 자체평가진행
 - 자체평가 문항개발(5.19.~6.2.), 지표교육(6.10.)
 -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자체평가진행(6.11.~20.)

□ (6~7월) 인권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인권영향평가, 보고서 작성

- 외부 평가위원 현장실사, 이해관계자 인터뷰, 결과분석, 보고서 작성
 - 외부 평가위원 현장실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(6.25.)
 - 인권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인권영향평가(6.26.~7.14.)
 -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서 제출(7.18.~28.)

	<p>제목 2025년 권·직별 인권실태조사 운영 안내(연장)</p> <p>부제/역할자 정책사업팀 / 신은재</p> <p>[2025년 인권영향평가, 인권실태조사 연장안내] 안녕하십니까. 정책사업팀 신은재입니다. 지난주에 진행했던 인권실태조사의 응답률이 50%이상으로 저조하여 이번주 금요일(6/30)까지 응답기한을 연장했습니다. 아직 참여 안 하신분들은 개별 문자 또는 아래 안내드리는 접속링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 **실문링크 https://new.e7survey.kr/?p=702505762KR ** 본 설문은 외부업체에서 진행되며, 응답자의 개별 정보는 전혀 알 수 없게 최종 정리만 전달됩니다. 응답자분들의 역 감사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5년도 파주시청소년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5. 7. 28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파주시청소년재단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권영향평가 지표교육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임직원 온라인 설문조사(실태조사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</p>

3. 기관운영 평가 결과

〈 평가결과 요약 〉

◆ 종합점수: 89.5% (286점 중 256점)

◆ 종합의견

- 기관운영 영향평가결과, 기관운영 분야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음
- 강제 노동의 금지, 아동 노동의 금지, 산업안전 보장, 소비자 인권 보호 분야는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
-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, 환경권 보장 분야는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함

□ 내용

No.	분 야	점수 ¹⁾			
		배점	조정배점	득점	달성률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74	74	72	97.3%
2	고용상의 비차별	34	28	27	96.4%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32	16	14	87.5%
4	강제 노동의 금지	16	16	16	100.0%
5	아동 노동의 금지	28	4	4	100.0%
5	산업안전 보장	32	30	30	100.0%
6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20	20	12	60.0%
7	현지주민의 인권보호	6	6	6	100.0%
9	환경권 보장	36	28	15	53.6%
10	소비자 인권 보호	22	22	22	100.0%
11	직장 내 인권보호	42	42	38	90.5%
총점		342	286	256	89.5%

1) 점수산출식: [(예×2점)+(보완필요×1점)+(아니오×0점)+(정보없음×0점)]÷(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×2점)

□ 기관운영 점검 집계결과

- 총 11개 분야, 35개 항목, 171개 지표 중 예 119개, 아니오(미 실시) 6개, 보완필요 18개, 정보없음 0개, 해당없음 28개로 집계됨
 - (보완필요)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, 고용상의 비차별,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,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, 환경권 보장, 직장 내 인권 보호 분야의 일부 항목은 주요 개선과제에 반영
 - (아니오) 환경권 보장 6개 항목
 - (정보없음) 없음
 - (해당없음) 고용상의 비차별,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, 아동 노동의 금지, 산업안전 보장, 환경권 보장 분야의 일부 항목은 점검일 현재 재단 활동과 직·간접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함
- (개선과제) 지표별 미이행 과제(‘보완필요’, ‘아니오’)에 대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, ‘예’로 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잠재적 인권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함

[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]

No.	분 야	평가 결과					계
		예	보완필요	아니오	정보없음	해당없음	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35	2	0	0	0	37
2	고용상의 비차별	13	1	0	0	3	17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6	2	0	0	8	16
4	강제 노동의 금지	8	0	0	0	0	8
5	아동 노동의 금지	2	0	0	0	12	14
5	산업안전 보장	15	0	0	0	1	16
6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2	8	0	0	0	10
7	현지주민의 인권보호	3	0	0	0	0	3
9	환경권 보장	7	1	6	0	4	18
10	소비자 인권 보호	11	0	0	0	0	11
11	직장 내 인권보호	17	4	0	0	0	21
합 계		119	18	6	0	28	171

□ 항목별 결과

○ 1.6) 구제절차 마련

<p>평가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권경영 지침 내에 구제절차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오프라인 상담실 및 클린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- 구제절차 이외에 다른 절차 이용 시 외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력하고 있음 - 구제절차 매뉴얼을 고도화하여 운영과 구제절차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실효성(효용성)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
<p>권고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제절차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구제절차 운영에 따른 실효성(효용성)을 평가하는 모의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를 권고함

○ 7.1)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

<p>평가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대재해처벌법,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한 과업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 서약서, 의무이행 서약서, 안전관리수칙을 통해 의무사항 안내를 실시하고 있지만,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인권보호 존중이행서약을 징구하는 것이 필요함 - 계약 체결 전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이 필요함
<p>권고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인권보호 존중이행서약을 징구하기를 권고함 - 협력회사와 계약 전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(ex. 모니터링, 설문, 방문, 인터넷 검색 등)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사를 선정(계약)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함

○ 7.2) 모니터링 실시

<p>평가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 체결 이후 설문, 방문,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인권보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이 필요함 - 모니터링 실시 이후 인권침해 사실 발견 시 시정 요구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이 필요함
<p>권고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력회사와 계약 체결 이후 정기적/비정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모니터링(ex. 설문, 방문, 인터넷 검색 등)을 실시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과 인권침해 사실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(ex. 계약해지 등)을 고려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함

○ 7.3)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

<p>평가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안담당 직원(ex. 안내데스크)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, 고객응대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 - 외주보안(ex. 케이티 텔레캅) 직원에 대하여 인권보호 존중 이행서약서 징구 및 인권보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이 필요함
<p>권고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주보안업체와 계약 체결 시 인권보호 존중이행서약을 징구 및 인권보호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,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시행을 권고함(ex. 관찰 평가, 간담회, 의견 청취, 설문조사, 이해관계자 응대 시 대응사항 등)

○ 7.3)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

<p>평가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안담당 직원(ex. 안내데스크)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, 고객응대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 - 외주보안(ex. 케이티 텔레캅) 직원에 대하여 인권보호 존중 이행서약서 징구 및 인권보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이 필요함
<p>권고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주보안업체와 계약 체결 시 인권보호 존중이행서약을 징구 및 인권보호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,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시행을 권고함(ex. 관찰 평가, 간담회, 의견 청취, 설문조사, 이해관계자 응대 시 대응사항 등)

○ 9.1)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

<p>평가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단은 중장기 ESG 경영계획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위한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, KPI를 설정하였으나, ESG 중장기 계획의 전략과 목표가 사업전략에 치우쳐 있으며 환경 관련 전략과 목표는 부족함 - 프로그램 제공 시설의 환경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, 페이퍼리스 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플래너 보급 및 친환경차량 운영을 통해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며,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- 환경과 관련된 임직원들 교육은 부족한 상황임
<p>권고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장기 ESG 경영계획 개정 시 재단이 가능한 범위에서 환경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환경경영체제를 보다 공고히 운영할 것을 권고함

○ 9.2) 환경정보의 공개

<p>평가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 관련 정보를 별도로 보고·공시하는 체계와 채널이 미흡하며, 환경정책 개발 과정에서 노동자, 고객, 공급자,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정보공개 및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<p>권고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재단은 다양한 사업성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므로, 사업성과 공개 시 환경경영에 대한 성과도 포함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함(홈페이지 ‘ESG경영’의 하위 메뉴에 ‘ESG경영성과’의 항목 신설, 또는 ‘정보공개’의 하위 메뉴 중 ‘경영공시’ 항목에 환경경영성과 또는 에너지 절감 실적 공개 등) - 환경정책 개발 시 재단과 연관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함(재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환경전문가 포함, 지역주민간담회, 협력사 간담회, ESG 경영위원회 신설, 환경경영전문가의 지도 등)

○ 11.1) 직장 내 괴롭힘 금지

<p>평가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장 내 괴롭힘을 유형화하고,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-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- 25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-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위한 고충상담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는 않았음 - 고충접수를 위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, 괴롭힘 발생 시 구제절차,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음
<p>권고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게시함으로써 구성원이 신고 및 구제절차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-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도 전문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

○ 11.3) 감정노동자 보호

<p>평가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정노동자 직무 및 인원을 파악하고 있으나, 별도의 명단이 작성되어 있지는 않음 - 이용자의 폭언 등 인권침해 예방을 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ARS 안내 문구를 송출하고 있음 - 감정노동자 보호교육을 연 1회 진행함 -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음
<p>권고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정노동자 명단을 작성하고,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조치할 것을 권고함

3. 주요사업 평가 결과

〈 평가결과 요약 〉

◆ 종합점수: 95.7% (46점 중 44점)

◆ 종합의견

-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95.7%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음
- 접근성과 참여 기회, 차별·혐오 방지, 공정성 및 참여 보장 분야는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
- 인권운영체제,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함

□ 내용

No.	항 목	점수 ²⁾			
		배점	조정배점	득점	달성률
1	인권운영체제	6	6	5	83.3
2	접근성과 참여기회	12	12	12	100.0
3	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	6	6	5	83.3
4	차별·혐오 방지	12	12	12	100.0
5	공정성 및 참여 보장	10	10	10	100.0
총점		46	46	44	95.7

2) 점수산출식: [(예×2점)+(보완필요×1점)+(아니오×0점)+(정보없음×0점)]÷(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×2점)

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점검 집계결과

- 총 1개 사업, 5개 항목, 23개 지표 중 예 21개, 아니오(미실시) 0개, 보완필요 2개, 정보없음 0개, 해당없음 0개로 집계됨
 - (보완필요) 인권운영체제,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항목의 일부 지표에 대해 권고사항을 제시함
 - (아니오) 없음
 - (정보없음) 없음
 - (해당없음) 없음
- (개선과제) 지표별 미이행 과제(‘보완필요’ , ‘아니오’)에 대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, ‘예’ 로 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잠재적 인권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함

[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]

No.	항 목	평가 결과					
		예	보완필요	아니오	정보없음	해당없음	계
1	인권운영체제	2	1				3
2	접근성과 참여기회	6					6
3	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	2	1				3
4	차별·혐오 방지	6					6
5	공정성 및 참여 보장	5					5
합 계		21	2	0	0	0	23

□ 항목별 결과

○ 1.1) 인권운영체제

평가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청소년정책참여사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내·외부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있으며,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대하여 개선을 실시하고 있음. 이해관계자 니즈 파악서 등 문서화된 정보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- SNS, 유선 등으로 내·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실시하고 있지만, 인권침해 사항 발생 시 접수하는 내·외부 채널 운영이 필요함- 2024년 12월 전 직원 대상 인권경영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. 전사적인 인권경영에 대한 마인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
권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인권침해 사항 발생 시 내·외부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(이용)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신고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(홈페이지 등에 게시)하기를 권고함

○ 1.3)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

평가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으며, 만족도 조사 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음-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파일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,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관, 삭제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
권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관, 삭제되고 있는지 유관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를 권고함

4. 행정사항

□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및 인권경영보고서 게시

-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재단 인권경영에 대한 내·외부 이해관계자 이해도 제고